시흥5차 푸르지오 입주자 모집공고

■ 당 아파트는 2007.9.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하는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 안심하고 분양 받으셔도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흥시 주택과－14233호(2008. 05. 14)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9-32번지 일대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 지하 5층, 지상 33층 2개동 총 426세대 및 주민공동시설, 판매시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 전용면적85㎡이하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10%인 6세대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6항에 의거 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3%인 13세대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 3자녀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 함.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단위 : ㎡, 천원)

(특별공급 76.7971㎡(E4) 2세대, 77.8111㎡(E3) 2세대, 77.7739㎡(E2) 2세대 총 6세대 및 3자녀특별공급 76.7971㎡(E4) 1세대, 77.8111㎡(E3) 1세대, 77.7739㎡(E2) 1세대, 122.7905(D) 3세대, 143.5019(C2) 2세대, 144.4704(C1) 2세대, 159.4538(B) 1세대, 159.6390(A2) 1세대, 158.8859(A1) 1세대 총 13세대 포함)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	TYPE		동별 (라인별)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 (주차장포함)	계약면적	세대 당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최고 층수
민영주택	21914-01	2008000470(01)	211.0000	211.7215	P1A	101동1호,102동1호	160.6612	51.0603	211.7215	94.5680	306.2895	24.1814	2	33층
				211.1367	P1B	101동2호,102동2호	159.7602	51.3765	211.1367	94.0376	305.1743	24.0458	2	33층
	21914-02	2008000470(02)	173.0000	173.5884	P2	101동2호4호,102동2호4호	133.5013	40.0871	173.5884	78.5811	252.1695	20.0935	8	32층
	21914-03	2008000470(03)	195.0000	195.0716	P3	101동1호3호,102동1호3호	149.3390	45.7326	195.0716	87.9034	282.9750	22.4773	8	32층
	21914-04	2008000470(04)	159.0000	158.8859	A1	101동7호,102동7호	122.9396	35.9463	158.8859	72.3643	231.2502	18.5038	48	30층
				159.6390	A2	101동3호,102동3호	122.9320	36.7070	159.6390	72.3599	231.9989	18.5027	48	30층
				159.4538	B	101동2호	123.4036	36.0502	159.4538	72.6375	232.0913	18.5737	26	29층
	21914-05	2008000470(05)	144.0000	144.4704	C1	101동5호,102동5호	111.1902	33.2802	144.4704	65.4484	209.9188	16.7354	54	30층
				143.5019	C2	101동1호,102동1호	110.4398	33.0621	143.5019	65.0067	208.5086	16.6225	54	30층
	21914-06	2008000470(06)	122.0000	122.7905	D	101동4호6호,102동4호6호	93.8949	28.8956	122.7905	55.2680	178.0585	14.1323	90	30층
	21914-07	2008000470(07)	79.0000	79.8348	E1	102동4호6호	59.6843	20.1505	79.8348	35.1311	114.9659	8.9832	6	6층
	21914-08	2008000470(08)	77.0000	77.7793	E2	102동2호	59.7614	18.0179	77.7793	35.1764	112.9557	8.9948	27	30층
				77.8111	E3	101동8호	59.8272	17.9839	77.8111	35.2152	113.0263	9.0047	27	30층
				76.7971	E4	102동8호	59.1525	17.6446	76.7971	34.8180	111.6151	8.9031	26	29층

(단위: ㎡, 천원)

TYPE	공급세대수	군별	층별구분	세대당 분양가격(천원)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금 1차(5%) (계약시)	2차(5%) (계약후20일이내)	중도금 1차(10%) (2008.9.15)	2차(10%) (2009.2.15)	3차(10%) (2009.7.15)	4차(10%) (2010.1.15)	5차(10%) (2010.6.15)	6차(10%) (2010.11.15)	잔금 (30%) 입주지정일
76.7971 (E4)	26	3	4~6층	67,253	135,683	202,936	10,146	10,146	20,293	20,293	20,293	20,293	20,293	20,293	60,886
		9	7~15층	70,318	141,868	212,186	10,609	10,609	21,218	21,218	21,218	21,218	21,218	21,218	63,660
		9	16~24층	73,381	148,045	221,426	11,071	11,071	22,142	22,142	22,142	22,142	22,142	22,142	66,432
		5	25~29층	76,830	155,006	231,836	11,591	11,591	23,183	23,183	23,183	23,183	23,183	23,183	69,556
77.8111 (E3)	27	3	4~6층	68,984	139,174	208,158	10,407	10,407	20,815	20,815	20,815	20,815	20,815	20,815	62,454
		9	7~15층	72,089	145,439	217,528	10,876	10,876	21,752	21,752	21,752	21,752	21,752	21,752	65,264
		9	16~24층	75,194	151,704	226,898	11,344	11,344	22,689	22,689	22,689	22,689	22,689	22,689	68,076
		6	25~30층	78,684	158,744	237,428	11,871	11,871	23,742	23,742	23,742	23,742	23,742	23,742	71,234
77.7793 (E2)	27	3	4~6층	68,914	139,035	207,949	10,397	10,397	20,794	20,794	20,794	20,794	20,794	20,794	62,391
		9	7~15층	72,020	145,299	217,319	10,865	10,865	21,731	21,731	21,731	21,731	21,731	21,731	65,203
		9	16~24층	75,121	151,558	226,679	11,333	11,333	22,667	22,667	22,667	22,667	22,667	22,667	68,011
		6	25~30층	78,611	158,598	237,209	11,860	11,860	23,720	23,720	23,720	23,720	23,720	23,720	71,169
79.8348(E1)	6	6	1	4~6층	71,228	143,704	214,932	10,746	10,746	21,493	21,493	21,493	21,493	21,493	21,493	64,482
122.7905 (D)	90	6	1	4~6층	112,625	249,492	362,117	18,105	18,105	36,211	36,211	36,211	36,211	36,211	36,211	108,641
		36	2	7~15층	117,234	259,703	376,937	18,846	18,846	37,693	37,693	37,693	37,693	37,693	37,693	113,087
		36	3	16~24층	122,999	272,473	395,472	19,773	19,773	39,547	39,547	39,547	39,547	39,547	39,547	118,644
		12	4	25~30층	128,764	285,243	414,007	20,700	20,700	41,400	41,400	41,400	41,400	41,400	41,400	124,207
143.5019 (C2)	54	6	1	4~6층	131,028	290,260	421,288	21,064	21,064	42,128	42,128	42,128	42,128	42,128	42,128	126,392
		18	2	7~15층	136,415	302,193	438,608	21,930	21,930	43,860	43,860	43,860	43,860	43,860	43,860	131,588
		18	3	16~24층	143,152	317,117	460,269	23,013	23,013	46,026	46,026	46,026	46,026	46,026	46,026	138,087
		12	4	25~30층	149,889	332,042	481,931	24,096	24,096	48,193	48,193	48,193	48,193	48,193	48,193	144,581
144.4704 (C1)	54	6	1	4~6층	131,492	291,288	422,780	21,139	21,139	42,278	42,278	42,278	42,278	42,278	42,278	126,834
		18	2	7~15층	136,915	303,302	440,217	22,010	22,010	44,021	44,021	44,021	44,021	44,021	44,021	132,071
		18	3	16~24층	143,698	318,326	462,024	23,101	23,101	46,202	46,202	46,202	46,202	46,202	46,202	138,610
		12	4	25~30층	150,480	333,352	483,832	24,191	24,191	48,383	48,383	48,383	48,383	48,383	48,383	145,152
159.4538 (B)	26	3	1	4~6층	147,019	325,684	472,703	23,635	23,635	47,270	47,270	47,270	47,270	47,270	47,270	141,813
		9	2	7~15층	153,035	339,010	492,045	24,602	24,602	49,204	49,204	49,204	49,204	49,204	49,204	147,617
		9	3	16~24층	160,551	355,660	516,211	25,810	25,810	51,621	51,621	51,621	51,621	51,621	51,621	154,865
		5	4	25~29층	168,067	372,310	540,377	27,018	27,018	54,037	54,037	54,037	54,037	54,037	54,037	162,119
159.6390 (A2)	48	18	2	7~15층	155,046	343,465	498,511	24,925	24,925	49,851	49,851	49,851	49,851	49,851	49,851	149,555
		18	3	16~24층	162,736	360,500	523,236	26,161	26,161	52,323	52,323	52,323	52,323	52,323	52,323	156,976
		12	4	25~30층	170,441	377,568	548,009	27,400	27,400	54,800	54,800	54,800	54,800	54,800	54,800	164,409
158.8859 (A1)	48	18	2	7~15층	153,349	339,708	493,057	24,652	24,652	49,305	49,305	49,305	49,305	49,305	49,305	147,923
		18	3	16~24층	161,003	356,663	517,666	25,883	25,883	51,766	51,766	51,766	51,766	51,766	51,766	155,304
		12	4	25~30층	168,672	373,650	542,322	27,116	27,116	54,232	54,232	54,232	54,232	54,232	54,232	162,698
195.0716(P3)	8	8	5	31~32층	264,288	585,465	849,753	42,487	42,487	84,975	84,975	84,975	84,975	84,975	84,975	254,929
173.5884(P2)	8	8	5	31~32층	233,285	516,785	750,070	37,503	37,503	75,007	75,007	75,007	75,007	75,007	75,007	225,022
211.1367(P1B)	2	2	6	33층	288,435	638,956	927,391	46,369	46,369	92,739	92,739	92,739	92,739	92,739	92,739	278,219
211.7215(P1A)	2	2	6	33층	288,155	638,337	926,492	46,324	46,324	92,649	92,649	92,649	92,649	92,649	92,649	277,950

▣ 발코니확장금액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부가세포함)은 아래 표의 해당금액으로,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은 분양가에서 제외되어 있음 (단위: 원)

TYPE		거실	거실-1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가족실	서재	주방	식당	드레스룸	대피공간	부부욕실	계
211.7215	P1A	6,167,000	4,606,000		2,665,000	2,725,000	2,750,000			1,398,000	1,808,000	1,007,000		2,472,000	25,598,000
211.1367	P1B	5,911,000			2,730,000	2,725,000	2,734,000			1,633,000	2,878,000	1,007,000		2,451,000	22,069,000
173.5884	P2	5,371,000	5,616,000		2,498,000	2,457,000			2,723,000			773,000		2,262,000	21,700,000
195.0716	P3	5,990,000	4,796,000		2,482,000	2,972,000		3,060,000		3,212,000		1,309,000	1,193,000	2,453,000	27,467,000
158.8859	A1	4,337,000	5,314,000		2,727,000	2,734,000									15,112,000
159.6390	A2	5,506,000			2,729,000	2,282,000				1,550,000					12,067,000
159.4538	B	5,375,000			2,729,000	2,746,000									10,850,000
144.4704	C1	5,200,000	4,043,000		1,751,000	2,506,000									13,500,000
143.5019	C2	5,472,000			2,727,000	2,252,000				1,616,000					12,067,000
122.7905	D	4,317,000		1,616,000	2,611,000										8,544,000
79.8348	E1	4,346,000			2,498,000					1,504,000					8,348,000
77.7793	E2	4,259,000			3,142,000										7,401,000
77.8111	E3	4,767,000			2,515,000										7,282,000
76.7971	E4	4,272,000		2,656,000	2,766,000										9,694,000

① 상기 확장비용은 확장부분에 대한 공사비이며, 발코니확장 공사비용(부가세 포함)은 확장부위 외부창호 및 비확장 부위 외부창호가 포함된 금액임.
②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설치 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③ 발코니확장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④ 본 아파트의 입주 후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적용됨.
⑤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음.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 포함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임.
• 상기 공급금액은 층별 향별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기타공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공히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충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천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 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금융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전용면적은 인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상기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라인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 받아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층별, 호별로 구분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면적은 2자리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경기도 시흥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2003. 6. 7. 부터 시행)되어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상기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됨
• 경기도 시흥시는 주택투기지역(2006. 11. 24. 부터 시행)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제한이 적용됨

▣ 청약시 유의사항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 및 2주택이상을 소유한 세대원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포함)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2순위 청약가능)하며, 상기요건을 위반하여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 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2007. 8. 24)에 따라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주택소유여부,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 신청시 주택 공급신청서에 청약자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 최초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가점항목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참조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 특별공급대상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08. 5. 15)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세대원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단체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시는 분.
– 청약예금 가입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함.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와 다른주택에 1회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세대 : 전용 85㎡이하 공급규모 86세대의 10% 이내로 총 6세대

주 택 형(타입)	76.7971㎡(E4)	77.8111㎡(E3)	77.7793㎡(E2)	79.8348㎡(E1)	합계
공 급 세 대	2	2	2	–	6

○ 접수일시 및 장소 : 2008. 5. 19(월) 10:00 ~ 14:00 / 당사 견본 주택 ○ 동 · 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 5. 19(월) 16:30 / 당사 견본 주택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내
※특별공급 신청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특별공급물량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특별공급 부적격 처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일반공급특별공급을 제외한 순위내 가입자에게 공급하는 물량)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본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 대상자 구비서류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8. 5. 15)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재산세과세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중 1통] 특별공급 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한함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신분증 및 도장.
*본인 및 배우자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제3자 대리 신청시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1통(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 신청자의 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양식 비치)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인정서만 인정(첨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불가) ※ 단독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가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2) 3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6항]

○ 3자녀 특별공급대상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08. 5. 15)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 청약예금 가입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함.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와 다른주택에 1회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이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이 안됨.
○ 3자녀 특별공급세대 : 전체 공급규모 426세대의 3% 이내로 총 13세대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밀율에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6년 내국인인구통계따라 서울시 거주자에게 40%, 인천시 거주자에게 10%를 각각 공급함.

주택형	211.7215㎡(P1A)	211.1367㎡(P1B)	195.0716㎡(P3)	173.5884㎡(P2)	158.8859㎡(A1)	159.6390㎡(A2)	159.4538㎡(B)	합계
공급세대	–	–	–	–	1	1	1	3
경기도	–	–	–	–	1	1	1	3
서울특별시	–	–	–	–	–	–	–	–
인천광역시	–	–	–	–	–	–	–	–

주택형	144.4704㎡(C1)	143.5019㎡(C2)	122.7905㎡(D)	79.8348㎡(E1)	77.7793㎡(E2)	77.8111㎡(E3)	76.7971㎡(E4)	합계
공급세대	2	2	3	–	1	1	1	10
경기도	1	1	2	–	1	1	1	7
서울특별시	1	1	1	–	–	–	–	3
인천광역시	–	–	–	–	–	–	–	–

○ 접수일시 및 장소 : 2008. 5. 19(월) 10:00 ~ 14:00 / 당사 견본 주택 ○동 · 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 5. 19(월) 16:30 / 당사 견본 주택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내 ※ 입주자 선정방법: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3자녀 특별공급 신청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3자녀 특별공급물량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3자녀 특별공급 부적격 처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일반공급특별공급을 제외한 순위내 가입자에게 공급하는 물량)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본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3자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3자녀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함
○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구비서류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8. 5. 15)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재산세과세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중 1통]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장분고자 하는 수도권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배점기준표 (접수장소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함)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신분증 및 도장.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 함) ※새로운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또는 단체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시는 분.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함. ※ 단독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가 있을 경우 : 가족 관계증명서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본인 및 배우자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 (직계 ·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제3자 대리 신청시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1통(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 신청자의 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양식 비치)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배점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배점표 (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계		100			
자녀수(1)	미성년자녀	40	4자녀이상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 ·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동점자처리 :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3)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5. 15)현재 시흥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시흥시 1년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가능 • 경기도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경기도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경기도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 함. (단, 수도권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청약신청을 할 경우에는 거주지역 해당 청약으로 청약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모두를 무효 처리함.
• 당해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당첨자 또는 기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청약(특별공급,1순위,2순위,3순위)이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안내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신청기준표(주택공급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